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23년 제6호(통권 제39호)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 <mark>발행인</mark> 허재준 | <mark>편집인</mark> 장인성 | <mark>편집교정</mark> 정철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 **TE**L 044-287-6083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고용효과*

박상철**

I.서론

삶의 질 개선에 따라 미용에 관한 관심과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미용산업'은 급성장해왔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두발미용업 사업체는 2010년 79,535개에서 2019년에는 105,020개로 25,485개가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2010년 120,322명에서 2019년 162,257명으로 41,9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미용산업은 영세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미용실 간 양극화(매출액, 소득 등)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미용사들은 일자리 부족,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일자리의 질, 미용사 간 소득 격차 등으로 인해 대부분 개인 미용실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나 미용실 창업의 높은 자금 부담, 홍보 및 마케팅 어려움 등의 문제들로 현실적으로 창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내생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미용실'이 논의되고 있다.

공유미용실은 다수 미용사가 1개 미용실에 입주하여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 및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줄여 미용사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앱을 통한 미용 예약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미용사가 항시 상주하는 미용실이 아닌 고객의 미용 서비스 요청 시 공유미용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없을 때 발생하는 미용실의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여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유미용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유미용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용업소시설·설비기준'에 대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운영하며 공유미용실을 위한 제도 변경의 제반 사항을 검증하고 있다.

^{*} 이 글은 박성재·김우영·박상철(2022),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고용효과』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 지역고용네트워크 대표, 경영학 박사.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유미용실 제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용효과(소득효과, 창업 증가, 일자리 질 개선 등)를 예측·분석하여, 공유미용실을 위한 제도화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유미용실 운영을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계량 분석하고, 둘째, 공유미용실이 고용 친화적으로 활 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공유미용실의 국내 현황 및 해외 사례를 다룬다. 제III장에서는 공유미용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미용 프랜차이즈 업체, 개인미용실 업주, 공유미용실 관계자 등) 간의 공유미용실에 대한 인식과 이슈를 소개한다. 제IV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공유미용실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공유미용실이 분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미용업체 수의 변화를 추정한다. 제V장에서는 공유미용실 관련 당사자들의 고용창출에 관한 진술 선호를 계량화하여 공유미용실 제도화

〈표 1〉 이미용업의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개,%)

				(ピカ・バック)
	이용 및 미용업		두발 미용업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계	170,488	100.0	110,510	100.0
1명	152,599	89.5	97,934	88.6
2~4명	14,262	8.4	9,478	8.6
5~9명	2,754	1.6	2,294	2.1
10~19명	708	0.4	651	0.6
20~49명	153	0.1	143	0.1
50~99명	8	0.0	6	0.0
100명 이상	4	0.0	4	0.0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2020년, 등록 기반).

〈표 3〉 미용 관련 서비스종사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

(단위 : 만 원, %)

			(근귀 : 긴 권, %)
		월 평균임금	
		2013년 2021년	
	미용 관련 종사자 (A)	138.3	187.8
전체	서비스종사자 (B)	148.8	185.2
	서비스종사자 대비 임금수준 (A/B)	(92.9)	(101.4)
	미용 관련 종사자 (A)	136.0	184.6
여성	서비스종사자 (B)	117.2	149.3
	서비스종사자 대비 임금수준 (A/B)	(116.0)	(123.7)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각 연도 하반기).

정착 후의 잠재적인 고용효과 및 소득효과를 추정한다. 마지 막으로 제VI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요약과 더불어 향후 공유 미용실 제도화와 고용효과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II. 공유미용실의 현황 및 해외 사례

1. 우리나라 미용업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분석

2020년 경제총조사 등록 기반 이·미용업 사업체 수는 총 170,488개이며, 이 중 1인 사업체가 152,599개로 약 8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자 수는 2020년 기준 218,210명이며, 이 중 1인 사업체 종사자는 152,599명으로 약 69.9%를 차지한다. 1인 미용실 중심의 산업구조임을 알 수 있다.

〈표 2〉 이미용업의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이용 및 미용업		두발 미용업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계	218,210	100.0	148,460	100.0
1명	152,599	69.9	97,934	66.0
2~4명	34,021	15.6	22,779	15.3
5~9명	17,674	8.1	14,896	10.0
10~19명	8,942	4.1	8,277	5.6
20~49명	3,949	1.8	3,699	2.5
50~99명	467	0.2	317	0.2
100명 이상	558	0.3	558	0.4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2020년, 등록 기반).

〈표 4〉 미용 관련 서비스종사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주당 근	로시간
		2013년	2021년
	미용 관련 종사자 (A)	53.3	45.6
전체	서비스종사자 (B)	47.7	39.2
	차이 (A-B)	5.6	6.4
	미용 관련 종사자 (A)	52.7	44.2
상용 근로자	서비스종사자 (B)	46.6	40.1
	⊼{0 (A−B)	6.0	4.2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각 연도 하반기).

미용 관련 서비스종사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은 2021년 약 187.8만 원으로 타 서비스종사자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약 45.6시간으로 전체 서비스종사자와 비교하면 평균 약 6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난다.

2. 공유미용실의 운영 체계

공유미용실은 1개의 미용실에 다수의 미용 사업자가 입점 하여 공유 가능한 시설 및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임대업 자에게 임대료, 시설 및 설비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따라서 공유미용실 입점 미용사들은 미용 시설 및 설비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공유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미용사가 공동으로 미용실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춰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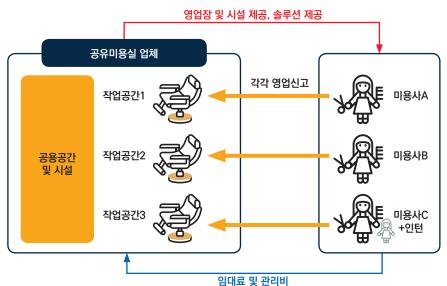
3. 공유미용실의 해외 사례

일본은 다양한 유형의 미용실이 공존하며 공유미용실도 이

러한 서비스 운영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시간 단위로 미용 공간을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인 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다. 미용 사업자가 유치한 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발생된 매출에서 임대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공유미용실 운영방식은 '의자 대여 방식'과 '부스(booth) 대여 방식'이 있다. 의자 대여 방식은 미용 작업을 할수 있는 단일 경대와 의자만을 필요할 때 대여하는 것이고, 부스 대여 방식은 일부 시설을 공유하면서 미용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이다. 위생관리를 위해 공유미용실 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영국의 살롱부스 대여(Salon Booth Rental)는 공유미용실 임대인이 독립 미용사에게 부스나 의자를 대여하고, 개인 미 용사는 미용실에 자신의 공간을 빌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 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유미용실과 유사한 개념이다. 살롱 부스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영국은 순수 공간만을 대여하 는 비중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 미용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장비를 미용사가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영 국은 미용사 면허가 없어도 일정 위생 기준에 적합한 공간이 면 미용실을 개설할 수 있어, 미용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Ⅲ.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대한 인식

1. 이해당사자 심층 면담

우리나라 공유미용실 도입과 제도화에 있어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각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공유미용실 찬성 의견

공유미용실 임대인과 입주미용사는 대체로 공유미용실 제 도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의견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창업비용 부담 효과가 크다. 공유미용실 제 도화에 가장 큰 긍정적 효과 중 하나는 미용실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줄여 미용사 창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유미용실 실증특례에서도 창업비용이 일반 미용실 창업비 용의 1/30배로 절감되었다. 둘째, 고정비용의 절감효과가 크 다. 공유미용실 입주미용사는 대체로 공유미용실이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절감하여 일반 미용실에 비해 고정비가 20% 감 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미용사 소득향상 효과가 크다. 매출액 전체가 공유미용실 몫으로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도 미용사의 소득이 증대된다. 넷째, 미용사의 일자리 질 개선효 과가 크다. 서비스를 제공할 고객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육아 및 가사로 인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도 활동하지 않는 미용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부 당노동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지 만, 미용숙련 습득, 미용실 창업 지원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 우, 부당한 노동 강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문제점들이 어 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여섯째, 미용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 다. 미용사는 미용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편의시설, 고객 응대 등은 임대업자가 수행하므로 집중화되고 양질화된 미용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공유미용실 반대 의견

미용업 단체, 미용 프랜차이즈업체 등은 대체로 공유미용 실 제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미용실 임대업자라는 새로운 이익 집단의 출현으로 미용업계가 왜곡될 수 있다. 기존에는 미용실 사업주와 구성원 간의 이익배분 구조였으나 임대인이라는 제3가 출현하여 아무런 노력과 책임 없이 이익분배를 받기

때문에 미용업계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과 같다. 둘째, 공유미용실은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기존 현장에서 이루어 지던 운영방식과 동일하다. 현재 일반 미용사는 본인의 영업 매출액에 20~60%까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셋째, 대자본 출현 시 영세 미용실은 생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공유미용실을 운영하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 편의 시설을 갖춘다면 영세 미용실은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넷째, 미용사 숙련 형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미용사의 숙련은 미용 실에서 경험을 통해 축적해 왔는데 공유미용실로 숙련이 낮 은 미용사도 창업을 쉽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미용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도 미용실의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준비 없는 창업 미용사 양산은 폐업률을 더 높일 것 이다. 여섯째, 미용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기존에는 미용실 경영자에게 무한 책임이 있었으나 공유미용실에서는 개별 미용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이 책임에 소홀히 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 이 있다. 여덟째, 기존 업무위탁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공유 계약서로 전환하여 계약상 악용될 소지가 있다.

2. 공유미용실 인식 및 실태조사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미용사 300명을 대상으로 공유미용실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공유미용실에 입주해있는 미용사,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 일반 미용실에 소속(또는 고용)되어 있는 미용사 3개 그룹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응답자 특성, 사업체 특성, 창업 및 교육훈련, 근무조건, 미용업 업계 전망, 공유미용실 관련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미용사는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고, 학력별로는 실무경력이 중요한 직종 특성상 기능인력 배출 중심인 고졸 및 전문대졸이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경력의 경우5~10년 구간이 가장 많았다. 다수의 미용사는 면허 취득 후스태프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나 면허 없이 스태프로일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훈련 참여 형태는 민간학원 53.3%, 공공직업훈련기관 31.5%, 미용실 내 도제교육 10.5% 순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표 5〉 응답자 인적 특성

		표본 수(명)	구성비(%)
성별	남성	17	5.7
ÖZ	여성	283	94.3
	20대	66	22.0
연령대	30대	113	37.7
인당네	40대	68	22.7
	50대 이상	53	17.7
	고졸 이하	152	50.7
학력	전문대 졸업	121	40.3
	4년제 졸업	27	9.0
전	체	300	100.0

〈표 6〉 미용사로 일한 경력 분포

	표본 수(명)	구성비(%)
1년 미만	11	3.7
1년 이상~3년 미만	30	10.0
3년 이상~5년 미만	38	12.7
5년 이상~10년 미만	97	32.3
10년 이상~15년 미만	52	17.3
15년 이상~20년 미만	32	10.7
20년 이상	40	13.3
전 체	300	100.0

〈표 7〉 교육훈련 참여 형태

	표본 수(명)	구성비(%)
정규 학교 교육	9	3.1
민간학원	157	53.3
공공직업훈련기관	93	31.5
미용실 내 도제교육	31	10.5
독학 및 기타	5	1.7
전 체	295	100

〈표 8〉 적합한 미용사 숙련 교육 운영형태

	표본 수(명)	구성비(%)
협회 운영	49	18.2
민간학원 운영	73	27.0
공공 훈련기관 운영	77	28.5
특정 미용실에서 도제식 운영	68	25.2
보건복지부 직영	3	1.0
전 체	270	100

[그림 2] 공유미용실 정착 후 미용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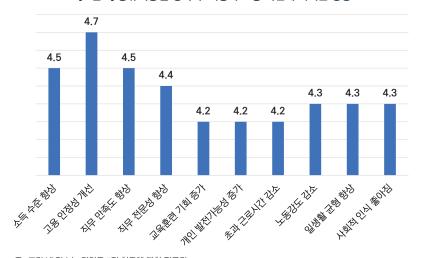


주 : 그림 내 점수는 리커트 7점 척도에 대한 평균값.

미용사 숙련 교육 형태는 공공훈련기관(28.5%)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민간학원(27.0%), 미용실 도제교육(2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목할 만한 형태는 미용실 도제식 교

육인데, 교육훈련 참여 형태에서는 약 10%의 비중만을 보였으나 적합한 숙련 교육 형태에서는 25.2%로 두 배 이상 비중이 높아졌다. 즉 공유미용실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과정에

[그림 3] 공유미용실 정착 후 미용사 고용 여건에 미치는 영향



주: 그림 내 점수는 리커트 7점 척도에 대한 평균값

서 여전히 미용실에서의 도제교육이 숙련 미용사 배출의 주 요 경로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공유미용실 및 자영업 미용사의 근로시간이 곧 매출과 소득으로 연결되 기 때문에 자발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 반 미용실에 고용된 미용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적 장시간 근로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측면에서는 월평균 매출액과 소득액 간 차이가 가장 큰 고용 형태가 일반 미용실에 고용된 미용사로 나타났으며, 공유미 용실 입주미용사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과 소득액 차이가 평 균 4.4백만 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자영업 미용사의 경우 공유미용실과 달리 월평균 매출액과 소득액 간 차이가 큰 것 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용실 경영에 소요되는 대자본(시설 투자, 임대보증금 등)의 지출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공유미용실이 정착될 경우 전체 종사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평균 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신규 인력증가라는 응답이 평균 4.9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태프 및 기타 인력, 현재 쉬고 있는 경력단절 미용사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공유미용실이 정착될 경우 미용사의 고용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평균 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 어서 소득 수준 향상(4.5), 직무 만족도 향상(4.5)이 뒤를 이었 다. 반면 교육훈련 기회(4.2), 개인 발전 가능성(4.2)과 같은 훈 련 여건 그리고 초과 근로시간 감소(4.2), 노동강도(4.2), 워라 밸(4.3)과 같은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IV. 공유미용실의 고용 및 소득효과

1. 공유미용실의 고용효과 분석 방법

공유미용실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첫째, 공유미용실이 있는 주소의 반경 lkm 이내 지역(동)의 미용업 수를 파악한다. 둘째, 각 공유미용실 인근의 행정구역에 대해 처치 지역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팔레트에이치 강남역 1호점의 경우 인접한 서초동과 역삼동을 처치 지역으로 설정한다. 셋째, 공유미용실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비교집단은 공유미용실이 위치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선정한다. 여기서는 비교집단 지역을 공유미용실이 있는 곳의 반경 1km 이내 지역과 인접한 지역(동)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한다. 넷째, 처치 지역과 비교 지역이 확정되면, 공유미용실의 효과는 합성 대조군 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과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한다.

합성 대조군(synthetic cohort) 방법은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처치 지역과 처치 시점 이전에 유사한 동향(trend)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공유미용실이 운영되기 이전에 처치 지역과 대조 지역의 미용실 수가 유사하도록 대조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

다. 이중차분법은 주로 제도 변경이나 사건 발생 후에 생기는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우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정한다.

$$\ln Hairshop_{it} = \beta_0 + \beta_1 D_i T_t + \beta_2 D_i + \beta_3 T_t$$

$$+ X_{it} \Gamma + \mu_i + \tau_t + \epsilon_{it}$$

$$(1)$$

위에서 $\ln Hairshop_{it}$ 는 i 지역(동), t 연도의 미용업 수에 로그를 취한 것이며, D_i 는 공유미용실이 있는 지역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T_t 는 공유미용실이 운영되고 있는 해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X_{it} 는 해당 지역, 연도의 통제변수(인구, 여성 비중 등), μ_i 는 지역 더미, τ_t 는 시간 더미, ε_{it} 는 오차항을 각각 의미한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계수는 β_1 인데 이 값이이중차분 값이다. 즉 공유미용실이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용업 수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의미한다.

2. 공유미용실의 고용효과 추정 결과

<표 9>의 결과를 보면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DT의 계수가 0.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제변수를 포함하면 0.044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고 있

〈표 9〉 공유미용실이 지역 미용업 수에 미치는 효과 (서초동, 역삼동)

	(8	a)	(b)	
VARIABLES	Inhairshop		Inhairshop	
	coef	se	coef	se
DT	0.120***	(0.025)	0.044	(0.045)
D	1.271***	(0.028)	1.246***	(0.119)
Т	0.382***	(0.036)	0.453***	(0.042)
로그(인구수)			-0.035	(0.194)
여성 비중			0.022	(0.034)
30~54세 여성 비중			0.062**	(0.024)
상수	4.310***	(0.041)	0.892	(3.105)
지역더미	포함		卫	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관측수	66		66	
R-squared	0.9	901	0.9	914

주: *** 1%, ** 5%, * 10% 유의수준.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임.

다. 즉 팔레트에이치 강남역점과 아데르 역삼점의 영업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미용업체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 로 변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은 앞서 서초동과 역삼동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을 처치군으로 하고, 2021년을 처치연도로 하여 식 (1)을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DT의 계수가0.032-0.036으로 모형 (a)와 (b)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팔레트에이치 도산점과 아데르 신사점이 공유미용실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이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미용업체 수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다.

<표 11>은 이중차분효과인 *DT*의 계수가 양수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유미용실이 해당지역의 미용업체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두 공유미용실의 경우에는 *DT*의계수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표 12>는 H 스타일 강변점 공유미용실의 반경 1km 이내지역인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을 처치군으로 하고, 화양동, 능동, 성수동, 송정동을 대조군으로 하여 식 (1)을 추정한 결과이다. 이중차분계수는 DT의 계수인데 음수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H 스타일 강변점 공유미용실이 역내 미용실 수를 줄인다고

(표 10) 공유미용실이 지역 미용업 수에 미치는 효과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

	(a)		(b)	
VARIABLES	Inhairshop		Inhairshop	
	coef	se	coef	se
DT	0.036	(0.025)	0.032	(0.066)
D	-2.664***	(0.028)	-3.602***	(0.585)
Т	0.355***	(0.036)	0.374***	(0.061)
로그(인구수)			-0.706	(0.352)
여성 비중			0.004	(0.049)
30~54세 여성 비중			0.069***	(0.021)
상수	5.977***	(0.034)	11.135**	(4.967)
지역더미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관측수	66		66	
R-squared	0.9	964	0.9	973

주 : *** 1%, ** 5%, * 10% 유의수준.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임

〈표 11〉 공유미용실이 지역 미용업 수에 미치는 효과 (서교동, 서강동, 합정동)

	(a)		(b)	
VARIABLES	Inhairshop		Inhairshop	
	coef	se	coef	se
DT	0.250*	(0.126)	0.321**	(0.127)
D	0.753***	(0.068)	0.752***	(0.120)
Т	0.395***	(0.097)	0.367***	(0.134)
로그(인구수)			0.411	(0.255)
여성 비중			0.037	(0.055)
30~54세 여성 비중			0.015	(0.029)
상수	3.139***	(0.082)	-3.499	(3.029)
지역더미	포함		卫	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관측수	88		88	
R-squared	0.9	680	0.9	724

주: *** 1%, ** 5%, * 10% 유의수준.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임.

판단하기 어렵다.

< 표 13>은 대전 H 스타일 시청점의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둔산동과 탄방동을 처치군으로 하고, 월평동, 갈마동, 만년동, 용문동, 괴정동을 대조군으로 하여 이중차분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공유미용실이 지역 내 미용업체 수에 미치는 효과 는 모형 (b)에서 -4%로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 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전 H 스타일 시청점이 지역 내 미용업

〈표 13〉 공유미용실이 지역 미용업 수에 미치는 효과(둔산동과 탄방동)

	(a)		(b)	
VARIABLES	Inhairshop		Inhairshop	
	coef	se	coef	se
DT	0.018	(0.064)	-0.040	(0.096)
D	1.542***	(0.034)	1.292***	(0.244)
Т	0.593***	(0.052)	0.939***	(0.143)
로그(인구수)			-0.142	(0.373)
여성 비중			-0.049	(0.036)
30~54세 여성 비중			0.061**	(0.023)
상수				
지역더미	포함		卫	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관측수	55		55	
R-squared	0.9	928	0.9	942

주: *** 1%, ** 5%, * 10% 유의수준.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임.

〈표 12〉 공유미용실이 지역 미용업 수에 미치는 효과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a)		(b)	
VARIABLES	Inhairshop		Inhairshop	
	coef	se	coef	se
DT	-0.037	(0.137)	-0.072	(0.073)
D	0.766***	(0.027)	0.696***	(0.121)
Т	0.459***	(0.142)	0.570***	(0.082)
로그(인구수)			-0.506*	(0.296)
여성 비중			0.184***	(0.044)
30~54세 여성 비중			0.071***	(0.012)
상수				
지역더미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관측수	77		7	7
R-squared	0.9917		0.9962	

주: *** 1%, ** 5%, * 10% 유의수준.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임.

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4>는 서울지역에 2021년 공유미용실이 시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중차분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공유미용실이 해당 지역의 미용업체 수에 미친 효과는 DT의 계수인데 12.3%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어도 공유미용실이 위치한 곳의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지역 내 미용업체 수가 공유미용실이 시작한 이후 감소하

〈표 14〉 공유미용실이 서울지역 미용업체 수에 미치는 효과

	(a)		(b)	
VARIABLES	Inhairshop		Inhairshop	
	coef	se	coef	se
DT	0.087	(0.072)	0.123*	(0.066)
D	0.923***	(0.033)	0.458**	(0.196)
Т	0.402***	(0.061)	0.396***	(0.066)
로그(인구수)			0.191	(0.181)
여성 비중			0.085***	(0.028)
30~54세 여성 비중			0.027**	(0.011)
상수				
지역더미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관측수	231		231	
R-squared	0.9884		0.9901	

주: *** 1%, ** 5%, * 10% 유의수준.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임.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공유미용실의 소득효과 분석 방법

여기에서는 공유미용실 미용사, 일반 미용실 미용사, 고용 된 미용사 사이에 소득 차이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회귀분석 모형은 식 (2)와 같다.

$$\begin{split} \ln income_i &= \beta_0 + \beta_1 Share_i + \beta_2 Regular_i \\ &+ X_{it} \, \Gamma + \mu_i \end{split} \tag{2}$$

위에서 $\ln income_i$ 는 개인의 소득에 로그를 취한 것이며, $Share_i$ 는 공유미용실 더미변수, $Regular_i$ 는 일반 미용실 더미변수이다(기준변수는 고용된 미용사). X_{ii} 는 성, 학력, 연령, 경력, 근로 시간, 지역 등의 통제변수를 나타내며, μ i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한편 고객 수와 미용 가격은 공유미용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내생변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통제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식 (2)를 추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 차항(μi)이 공유미용실 미용사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유미용실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들이 랜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집 편향(sample selec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미용실 미용사와 일반 미용실미용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Heckman의 선별모형(selection model)으로 추정한다.

4. 공유미용실의 소득효과 추정 결과

위의 식 (2)를 OLS로 추정한 결과, 공유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가 고용된 미용사보다는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 미용실 미용사보다는 소득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을 통제한 추정 결과를 보면 공유미용실 미용사가 고용된 미용사보다 약 32.7% 소득이 높으나 일반 미용실 미용사보다는 약 18.8%(51.5-32.7)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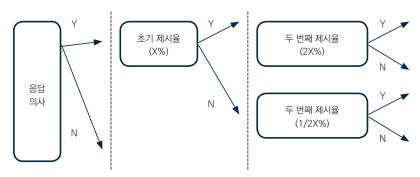
Heckman 표본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공유미용실 미용사와 일반 미용실 미용사의 소득함수를 추정한 결과 inversed Mill's ratio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대부분 소득함수의 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표본 수 가 적기 때문일 수 있으며, 아니면 sample selection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료를 이용

〈표 15〉 미용사 형태에 따른 소득함수 추정 결	결과(OLS)
-----------------------------	---------

변수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공유미용실	0.266**	(0.053)	0.327**	(0.053)
일반 미용실	0.484**	(0.067)	0.515**	(0.065)
여성더미	-0.023	(0.077)	-0.057	(0.077)
연령	-0.024	(0.018)	0.014	(0.019)
연령의 제곱	0.000	(0.000)	-0.000	(0.000)
전문대졸	-0.010	(0.040)	-0.060	(0.040)
대졸	-0.039	(0.062)	-0.084	(0.061)
경력	0.016	(0.011)	0.012	(0.011)
경력의 제곱	-0.001*	(0.000)	-0.001*	(0.000)
일일근로시간	0.018	(0.020)	-0.001	(0.021)
주당근로일수	0.386**	(0.093)	0.351**	(0.091)
상수항	-0.921	(0.578)	-1.457**	(0.601)
지역더미	불포함		포함	
관측수	300		300	
R-squared	0.388		0.544	

주 : **는 5%, *는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그림 4] 이중양분선택형 질문형식



해서는 Heckman 표본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OLS의 추정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결과는 생략하였다.

V.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자영업 미용사의 잠재적 고용 및 소득효과

1. 분석 방법론

공유미용실 규제가 개선되고 시장에서 충분한 정착이 이루 어진다는 가정하에 자영업 미용사의 고용 및 소득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시점의 자영업 미용사 고용 및 소득효과가 아니라 응답자가 미래에 예상하 는 잠재적인 자영업 미용사 고용 및 소득효과를 의미한다. 미 래시점에 대한 예측은 기존 통계로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에 응답자의 진술 선호를 계량화하는 방법인 가상가치측 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통해 잠재적 고 용 및 소득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CVM은 응답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제학에서 Hicks의 보상수요함수를 추정 하는 기법으로 알려져 왔다. 진술 선호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WTP를 추출하는 질문형식에는 경매법, 양분선택법, 직접 응 답법(open question)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 절에서는 이 중양분선택(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DBDC)법 을 활용하였다.

DBDC의 질문 형식은 양분 선택 질문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다. 가령 공유미용실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된 후 관련 인력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해 특정 제시액을 응답자에게

제시하며, 이 금액이 초기 제시액이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초기 제시액에 대해 동의할 의사가 있으면 두 번째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수용 의사를 유도하며, 초기 제시액에 대해 동의할 의사가 없으면 두 번째는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추정 및 해석상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도출된 WTP가 응답자의 지불의사 금액이아니라 응답자가 판단하는 내재적 변화라는 점이다.

2.분석 결과

가.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자영업 미용사 고용효과

공유미용실이 제도화되고 3년간 시장에서 정착된다는 가 정하에 응답자가 예상하는 자영업 미용사 고용효과 추정은 앞서 소개한 CVM 방식으로 분석한다. 응답자가 예측하는 공 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자영업 미용사 고용 증가율은 연간 약 8.0%로 추정되었다. 즉 공유미용실 제도화 이후 노동시장

〈표 16〉 공유미용실 제도화 이후 응답자가 예상하는 자영업 미용사 고용 증가율 산출 결과

고용 증가율(%)	8.0278
표준오차	2.2985
P-Value	0.000
95% 신뢰하한	3.5227
95% 신뢰상한	12.5328

〈표 17〉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자영업 미용사 고용효과 산출 결과

2019년 기준 두발미용업 종사자 수 (A)	162,257명
응답자가 예상하는 잠재적 고용 증가율 (B)	8.0278%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연간 자영업 미용사 고용효과 (A×B)	13,025명

에서 3년간 정착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자영업 미용사 고용 증가율로 이해할 수 있다.

추정된 자영업 미용사 고용 증가율을 전국 두발미용업 종사자 수에 적용하여 고용효과를 산출하면,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자영업 미용사 연간 고용효과는 약 13,025명으로산출된다. 미용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 및 공유미용실 입주인원 등 모집단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9년 사업체조사 기준 두발미용업 종사자 수를 모집단으로 고려하며, 2019년 기준 두발미용업 종사자 수는 162,257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추정된 자영업 미용사 고용 증가율인 연간 약 8.0%의 고용 증가율을 적용하면 13,025명의 연간 자영업 미용사고용효과가 산출된다. 다만 이러한 잠재적 고용효과는 응답자의 추상적인 진술 선호를 계량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미용실 및 자영업 미용실에서 공유미용실로의 이전 효과, 신규창업효과 등이 혼재된 것임에 주의해야한다.

나.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자영업 미용사 소득효과

공유미용실이 제도화되고 3년간 시장에서 정착된다는 가 정하에 응답자가 예상하는 자영업 미용사 소득효과 추정은 앞서 소개한 CVM 방식으로 분석한다. 응답자가 예측하는 공 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자영업 미용사 소득 증가율은 연간 약 10.7%로 추정되었다. 즉 공유미용실 제도화 이후 미용 시

〈표 18〉 공유미용실 제도화 이후 응답자가 예상하는 자영업 미용사 소득 증가율 산출 결과

소득 증가율(%)	10.6859
표준오차	1.7738
P-Value	0.000
95% 신뢰하한	7.2093
95% 신뢰상한	14.1624

〈표 19〉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자영업 미용사 소득효과 산출 결과

실태조사 기준 미용사 월평균 소득액 (A)	4.3백만 원
실태조사 기준 미용사 연평균 소득액 (B)	51.6백만 원
응답자가 예상하는 잠재적 소득 증기율 (C)	10.6859%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자영업 미용사 소득효과 (연봉 기준) (B×C)	5.5백만 원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자영업 미용사 소득효과 (월급 기준)	0.46백만 원

장에서 3년간 정착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자영업 미용사 소득 증가율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 미용사 모집단의 평균 소득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미용사 월평균 소득액을 모집단으로 고려하며, 실태조사 기준 미용사 월평균 소득액은 4.3백만 원이고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51.6백만 원이다. 여기에 추정된 잠재적 소득 증가율인 연간 약 10.7%의 소득 증가율을 적용하면 5.5백만 원의 연간 소득효과가 산출된다. 이를 다시 월 급여액으로 환산하면 0.46백만 원으로, 공유미용실 제도화 이후 자영업 미용사의 월평균 소득액이 약 46만 원가량들어날 것이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잠재적소득효과는 응답자의 진술 선호를 계량화한 것이기 때문에미래 경제환경 및 원자재 가격 변화, 미용 서비스 가격 변화등을 모두 고려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VI. 정책적 제언

1. 미용사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현재 미용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공공직업훈련기관, 민간학원, 미용실 도제 등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미용사 재직자(자영업 미용사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재직자 훈련과정의 부재와 더불어자영업 미용사들의 경우 미용실 운영으로 인해 훈련 참여가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용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자영업 미용실 자생력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훈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위생교육의 경우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미용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용 단체는 미용 기술의 변화, 미용산업의 전망 등에 가장 통찰력 있는 기관으로, 미용사의 미용 기술 보수 과정, 신기술 습득 과정 등을 운영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시 운영되는 훈련체계 마련을 위해 실습이 필요한 재직 미용사 훈련은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하고, 시청각 훈련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히 미용사를 위한 맞춤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미용사 의 구인구직, 미용실 임대 정보, 미용 제도변경 사항, 온라인 훈련 및 훈련정보 등의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재직자 훈련은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하기 위하여 먼저 재직 미용사 훈련기관은 훈련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훈련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공유미용실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공유미용실 제도화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미용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도 필요하다.

먼저 공유미용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로 임차인인 미용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표 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공유미용실 표준 계약서의 항목은 촘촘하게 제시하되 항목 내용은 최소화하 여 자율적 운영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용실 운영자와 미용사와의 미용 서비스 위탁계약, 근로 계약 등으로 계약해야 함에도 편법으로 공유미용실 계약으로 대체하여 미용사가 고용안전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용사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수행할 것이며, 공유미용실 계약에 대한 악용일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적 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유미용실 계약을 악용한 미용실에 대해 미용사 커뮤니티나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 미용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용실 위생 검사와 연계하여 일정 기간추가적 관리·감독 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직접 방문하여모니터링하는 것이 추가적 제재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성재 · 김우영 · 박상철(2022),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